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10호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창원시의회 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 관련 문제가 폭증하고 있으며 창원시에서도 잇달아 마약 거래 현장과 마약 사용이 적발되고 있어, 창원시의 마약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의 건전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며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창원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7,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cost403@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해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2
----------	-----

발의연월일 : 2023. 10. .

발 의 의 원 : 이해련 · 강창석 · 김수혜 · 김영록 · 김혜란
성보빈 · 이정희 · 이종화 · 정길상
최정훈 의원(10명)

찬 성 의 원 : 구점득 · 김미나 · 김현일 · 서영권
손태화 의원(5명)

1. 제안이유

○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 관련 문제가 폭증하고 있으며 창원시에서도 잇달아 마약 거래 현장과 마약 사용이 적발되고 있어, 창원시의 마약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의 건전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며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창원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교육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근절과 오남용 예방 캠페인 등 홍보에 관한 사업
3.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숨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